[별지 제2호의 3서식](2027년 1회차 심사부터 적용)

우수제품지정심사서
(가구 제품)

제품명		회사명	

<table>
<tr><td rowspan="11">기술
심사
(50)</td><td rowspan="2">평가지표</td><td colspan="5">평가배점</td><td rowspan="2">평점</td></tr>
<tr><td>매우
탁월</td><td>탁월</td><td>보통</td><td>미흡</td><td>매우
미흡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만 적용된 신청제품은 1-2를 적용하여 정성과 정량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하고,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호(실용신안)까지의 신청제품은 1-1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.</td></tr>
<tr><td>1-1. 기술의 차별화 정도</td><td>10~9</td><td>8~7</td><td>6~4</td><td>3~2</td><td>1~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- 매우탁월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
- 탁　　월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우수한 경우
- 보　　통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
- 미　　흡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
- 매우미흡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</td></tr>
<tr><td>1-2. (정성) 기술의 차별화 정도</td><td>9</td><td>8</td><td>7</td><td>6</td><td>5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- 매우탁월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
- 탁　　월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우수한 경우
- 보　　통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유사한 수준일 경우
- 미　　흡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이 미흡한 경우
- 매우미흡 : 동일 세부품명의 다른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</td></tr>
<tr><td>1-2. (정량) 기술의 차별화 정도</td><td colspan="6"><table><tr><th>평가등급</th><th>평가배점</th></tr><tr><td>AAA, AA</td><td>1</td></tr><tr><td>A, BBB</td><td>0.9</td></tr><tr><td>BB, B</td><td>0.8</td></tr><tr><td>CCC, CC, C</td><td>-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2. 기술의 개선정도</td><td>10~9</td><td>8~7</td><td>6~4</td><td>3~2</td><td>1~0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- 매우탁월 :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탁월한 경우
- 탁　　월 :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탁월한 경우
- 보　　통 :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
- 미　　흡 :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
- 매우미흡 : 종래 기술에 비해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경우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-1을 적용하고, 일반·주변기술인 경우 3-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.(3-1과 3-2 중 하나만 평가)
다만, 전회(前回)차 심사에서 참여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3-1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금회(今回)차 심사에서는 3-1로 평가하되 3-2로 평가할 경우 종합평가란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, 전회(前回)차 심사에서 3-2를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금회(今回)차에는 3-1과 3-2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가 가능합니다.
※ 일반·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, 유지·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</td></tr>
</table>

	한 기술을 말한다.						
	3-1.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(본질적인 기능 관련)	30~27	26~23	22~19	18~15	14~11	
	- 매우탁월 :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- 탁 월 :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- 보 통 :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- 미 흡 :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- 매우미흡 :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						
	3-2.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(일반·주변기술)	22~19	18~15	14~11	10~7	6~0	
	- 매우탁월 : 대표 기술이 일반·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- 탁 월 : 대표 기술이 일반·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- 보 통 : 대표 기술이 일반·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- 미 흡 : 대표 기술이 일반·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- 매우미흡 : 대표 기술이 일반·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						
	소 계(A)						

	평가지표	평가배점					평점
		매우탁월	탁월	보통	미흡	매우미흡	
디자인심사(20)	1. 혁신성	5	4	3	2	1	
	- 매우탁월 : 형상·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경우 - 탁 월 : 형상·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높은 수준인 경우 - 보 통 : 형상·모양 등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- 미 흡 : 형상·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일부 개선한 경우 - 매우미흡 : 형상·모양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경우						
	2. 심미성	5	4	3	2	1	
	- 매우탁월 : 신청제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매우 잘 조화·표현된 경우 - 탁 월 : 신청제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조화·표현된 경우 - 보 통 : 신청제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조화·표현된 경우 - 미 흡 : 신청제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표현이 있는 경우 - 매우미흡 : 신청제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미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 경우						
	3. 사용성	5	4	3	2	1	
	- 매우탁월 :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, 활동성을 매우 높인 경우 - 탁 월 :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, 활동성을 높인 경우 - 보 통 :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, 활동성을 다소 높인 경우 - 미 흡 :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, 활동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- 매우미흡 : 사용자의 공간 사용 효율성, 활동성을 제약하게 하는 경우						
	4. 조화성	5	4	3	2	1	
	- 매우탁월 :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매우 잘 구현된 경우 - 탁 월 :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잘 구현된 경우 - 보 통 :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일반적으로 구현된 경우 - 미 흡 :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다소 부적합하게 구현된 경우 - 매우미흡 : 형상·모양·색채 등이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						
	소 계(B)						

	평가지표	평가배점					평점
		매우 탁월	탁월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품질심사 (30)	**4.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**	20~18	17~14	13~7	6~3	2~0	
	- 매우탁월 :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·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- 탁 월 :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·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- 보 통 :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·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- 미 흡 :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·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- 매우미흡 :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·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						
	5. 조달물자로서의 품질·성능 신뢰성	8~7	6~5	4~3	2~1	0	
	- 매우탁월 :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- 탁 월 :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- 보 통 :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- 미 흡 :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- 매우미흡 :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						
	6. 핵심공정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계획*	2	1.5	1	0.5	0	
	- 매우탁월 : 지정기술 관련 제시한 핵심공정이 신청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- 탁 월 : 지정기술 관련 제시한 핵심공정이 신청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- 보 통 : 지정기술 관련 제시한 핵심공정이 신청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발생하는 경우 - 미 흡 : 지정기술 관련 제시한 핵심공정이 신청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- 매우미흡 : 지정기술 관련 제시한 핵심공정이 신청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* 지정신청기술과 핵심공정 간의 관련성 및 품질관리계획(자체 또는 외주·구매)의 적정성을 심사						
	소 계(C)						
합 계(D) = A+B+C							

※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

	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평점
기술품질가점 (최대 3점)	**① 4차 산업혁명 관련성(최대 1점)** - AI, 로봇, 탄소중립, 사물인터넷, 미래 모빌리티, 에너지보존 등 최신 기술과 핵심 기술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0~1점	
	②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(최대 3점) -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·부품·소재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국산화 비율,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0~3점	
	③ 기술·디자인 관련 수상내역(최대 3점) **- 아래 2개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0~3점** - 핵심(대표)기술이 대한민국 기술대상, IR52 장영실상, 미국 DRC(DARPA Robotics Challenge), 미국 CES 등 기술 관련 수상내역 - 굿디자인 어워드(국내), IDEA디자인 어워드(미국),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(독일), 굿디자인 어워드(미국), iF(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) 디자인 어워드(독일) 등 수상내역	
	④ 종합적 평가 (최대 3점) - 기술·품질 등의 종합적 평가 결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비용절감, 성능향상 등 종합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려하여 0~3점	
	⑤ 품질보증 조달물품 관련(최대 2점) -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증서 상 명시된 제품으로 A등급 이상은 2점,	

	B등급은 1점	
기술 품질 감점 (최대 −3점)	**① 핵심(대표)기술의 확인방식 제시 미흡(최대 −3점)** - 제품설명서의 **'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확인 방식'에 대한 설명이** 핵심(대표)기술의 성능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	
	②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간 연계성 부족(최대 −2점) - 품질소명자료가 기술에 따른 성능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* 단,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소프트웨어(GS)인 경우 제외	
	가점 소계(E) (최대 3점)	

종 합 의 견	**※작성방법※** -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-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- 규격서, 기술소명자료,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- 기술이 설치·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제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- 심사자료와 제품규격서의 일치 및 납품가능 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하여 기재

평 가 결 과	**총점(D+E)**	